

1970 年 度 的 大 學 圖 書 館

— 國 立 大 學 校 圖 書 館 的 今 日 与 明 日 —

柳 東 烈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司書課長)

금년도도 大學圖書館界에는 눈에 뜨일 만한 發展相이 엿보이지 못한 채 멎없이 지나가는 상 같다.

日增月加로 비약, 발전해 나가야 할 우리 大學圖書館 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踏步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踏步 상태는 어느 세월에 가서야 驅步로 비약하게 될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다.

돌이켜 보면 대 조국광복을 맞은지도 벌써 25년이나 되며 대학도서관도 연륜으로 보아 원기왕성한 청년기에 접어들은지 이미 오래이전만 아직 거름마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허다한 장애와 무슨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물론 6·25의 전화로 인하여 발육이 부진한데다가 아직도 자주국방에 전력치 않으면 아니될 국가의 재정형편이 허락치 않은데에 기인된다고도 하겠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본다. 딱 잘라 말한다면 大學圖書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부족이 그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일반의 인식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에 대한 정부당국의 이해를 촉구하고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늘 서로 모여 도서관의 苦情을 털어 놓고 도서관 발전책을 논의하여 관계 당국에 진정도 하고 전의도 하곤 하였다.

금년도에도 예년이나 대동소이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되풀리하여 보았다. 5월에는 부산교육대학에서 제9회 전국대학도서관대회를 갖고, 8월에는 전남대학교부속도서관에서 제 11차 전국국립대학 도서관장회의(동 사서장회의 병행)가 열린 바 있다. 이러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대학도서관의 고충을 호소도 하고 그 발전책을 진지하게 토론하여 관계 당국에 전의도 하여 왔다.

온갖 간난을 무릅쓰고 도서관을 지켜왔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발전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의 이 애처러운 결규와 하소연이 한낱 배아리로 돌릴 수 만은 없는 세월이 지났다.

아직 까지도 「圖書館」이라 하면 「圖書라는 物品을保管하는 倉庫」로 알며 「司書」란 이 「物品倉庫」를 지키는 倉庫直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작 잘 이해하여 주는 이라야 「知識의 寶庫」니 「特殊技能職」이라고 인식할 정도이다. 그것은 대학도서관들의 현況이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즉 도서관의 三大構成要素인 施設, 藏書 및 職員이 하나같이 不完全하고 不備하고 不足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教育法 第108條의 规定에는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 研究하여 指導者的的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하여 대학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중고한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존재는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重且大한 使命을 떠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대학도서관의 현 실태는 너무나 빈약한 狀態에 있다.

대학도서관에는 국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또 사립도 있겠으나 국가의 시체이 바로 반영되는 곳이 곧 國立大學校圖書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국립대학도서관의 현황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국가시체이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그 개선을 촉구하는 뜻에서 대학도서관 중 특히 6개 국립대학도서관의 시설, 장서 및 직원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施 設

도서관의 모든 시설은 各室 및 시설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기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시청각자료를 비롯한 각종, 비 도서자료가 조사나 연구 및 교육상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시청각시설 등을 완비하여야 하며 또 각종 문헌의 복제 내지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면 「도서관에는 열람실, 정기 간행물실, 서고, 사무실을 갖출 것」(同法令 제11조 제1항)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15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할 것」(同法令 제11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래도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위 낙 부적정한 최저기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학도서관에는 위의 시설밖에

도 參考圖書室, 指定圖書室, 視聽覺室, 文獻複寫室등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대학교도서관들이 이러한 시설은커녕 그 최저기준이 부적정하다고 느껴지는 법적기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예컨대 서울대도서관은 일정하(日政下) 1926년에 제국대학시대의 도서관 전통의에 8·15이후 각 단과대학별로 건축한 쪼무랑 쪼무랑한 건물 10여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 총 면적은 5,000여평에 달하며 열람좌석의 총수도 법적기준은 겨우 초과한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운영을 기함에 적합치 못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경북大, 부산大, 충남대도서관들은 최근 몇년전에 건축되었고 열람좌석수는 법적기준에 겨우 달한다고는 하지만 열람실과 서고뿐이 건물외에 별로 다른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大와 전북대도서관은 구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建物의 규모나마 법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전남대도서관은 금년에 2,000평짜리 건물의 신축을 착공하였으며 73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이라니 심히 다행한 일이다.

2. 藏 書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은 질과 양의 양면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질적인 최저기준은 설정하기가 힘들며, 실제로 기준도달 여부가 손쉽게 이루어질수 없는 것으로 늘 장서의 수량문제가 논의되곤 한다.

우리 나라의 법규에 의한 대학장서의 기준량을 보면 「學生 1인에 대하여 30책 이상으로 하되 學科當 5,000책 이상」(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 제3항)으로 되어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50년 8월현재로 조사된 日本의 71개 국립대학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 총장서수가 13,988,243책으로서 1개대학 평균이 197,017책이며 학생 1인당 책수는 8,263책이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20년후인 현재 우리 나라의 국립대학교의 학생정원 총수는 31,790명(별표 1참조) 총장서수는 1,300,000책으로서 학생 1인당 42책이며 이 중 서울대도서관 장서중에서 구 제국대학도서관 장서 500,000책(이용가치가 극히 회소함)을 빼놓는다면 학생 1인당 25책에 불과하다. 양자를 비교하여 볼때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天壤之差다.

우리 나라 대학장서의 법적 최저기준을 학생 1인당 30책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은 참 낮이 뜨거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기준에나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숨기지 못할 기막힌 현실이다.

경북대도서관이 학생 1인당 33책으로 법적기준량을 겨우 넘었을 뿐이며 서울대도서관은 학생 1인당 24책(구 제국대학 장서 500,000책 제외)으로서 법적기준량

보다 82,000여책이 부족하며 여타 대학교는 30,000책 내지 70,000책씩 부족한 현상이므로 이를 도서관의 연간증가 책수를 3,000책 내지 6,000책으로 본다면 경북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 국립대학교는 10년 후라야 그나마 법적기준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3. 職 員

제아무리 완비된 시설과 질이나 양이나 양면으로 우수한 장서구성을 가진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이를 관리운용할 우수한 전문직원 즉 유능한 司書가 없다면 그 가능은 전혀 마비되고 시설이나 장서는 사장되고 말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서직을 배치하고 있기는 하나 국립대학교 전부를 합친 사서직의 총수는 52명에 불과하다(별표 2참조) 이 52명의 인원으로서 1,300,000책을 관리 운용하려면 사서직 1인당 26.500책의 무거운 짐이 지워질 것이다. 이는 참으로 과중한 짐임에 틀림 없다. 그러므로 각 대학교에서는 나머지 인원은 임시직으로서 이를 보충하여 200여명(별표 3참조) 이 근근히 그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69년도에는 국립대학교도서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총수는 205명이고 그 중 전문직(사서 또는 준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50명으로서 전체직원의 2.4% 이였으나 1970년도에 들어서서는 이직자(離職者)의 격증으로 인하여 전체직원수 208명중 전문직은 불과 34명으로서 전체직원의 16%로 격감되었으며, 앞으로도 점점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방소재 국립대학교도서관은 1명 내지 2명의 전문직이 대학도서관을 움직이고 있는 실정으로서 대학도서관운용에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한탄만 하고 낙심한채 수수방관할수는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대학도서관이 발전할수 있는 조건성취를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 기우려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빌벼둥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비견을 펴려하고자 한다.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중 가장 화급한 것은 첫째 장서의 충실회이며 둘째 직원의 확보인데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現在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대학도서관 발전조건의 완비는 당분간 곤난할 것임으로 국립대학의 성질상 적절한 방안은 되지 못하겠지만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로 허락될 때까지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만부득이 학생수혜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교육기관에서도 육성

회비로서 그 운영경비의 부족을 충당하지 않으면 아니된 이마당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경비의 보충을 수해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궁여지책을 제의하는 바이다.

위의 첫째 문제인 장서의 충실희화문제에 있어서는學生 1인당 年 4책을 마련하되 그 중 2책분은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책분(책당 3,000원 내지 3,500원 계상)은 수혜자 즉 학생의 부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 1명이 매년 도서 2책씩을 사서 읽고 이를 도서관에 기부하는 셈 친다면 이문제는 손쉽게 해결 될 것이다.

둘째 문제인 직원의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국고 예산의 잡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임시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규직으로 양성화하여 직원을 증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교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사서직 정원을 100명으로 보고 매월 평균 5,000원정도의 사서직수당을 지급한다 하드라도 연간 6,000,000원 정도의 지출로서 충분할 것이므로 이는 관심의 문제이지 재정문제 만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한다.

이 사서직수당이 국고예산에서 지급될 때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학생수혜경비에 의존한다 하여도 그 해결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명년도 즉 1971년도 제1학기부터 학생도서비를 학기당 4,000원 내지 5,000원으로 증액 징수

한다면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장서의 충실희화문제나 도서관직원의 확보문제는 무난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학생도서비 증액징수의 여부가 대학도서관의 사활문제의 관건을 쥐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 진데 정부 당국은 물론 대학 당국이나 학생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가 결실히 요망된다.

사활의 위기에 처한 대학도서관계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대학도서관들이 사경에서 구출되어 1971년도는 跳躋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위 글중에 나오는 숫자는 한국도서관협회 발행 「한국 도서관통계」를 참고로 한 것임.

(별표 1) 국립대학교 학생 정원표 및 현원표

구 분 대 학 교 별	학과수	학년 정원
계	233	31,790
경 북 大	43	4,268
부 산 大	36	4,884
서 울 大	87	12,848
전 남 大	31	3,894
전 북 大	25	3,322
충 남 大	20	2,574

* 이 표는 대학학생정원령(1968. 12. 24 대통령령 제4475조) 중 별표에서 발췌한 것임

(별표 2)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사서직 공무원 정원표

학 교 별	직급별(직명)	3 잡 (사서관)	3 을 (사서관보)	4 잡 (사서)	4 을 (사서보)	5 잡 (사서서기 보)	5 을 (사서서기 보)	계
국립 대학교	계	2	1	21	21	20	8	73
국립 대학	국립 대학	2	1	15	8	18	8	52
교육 대학			5	4	1			10
국립 실업 고등 전문 학교				8	1			9
공립 대학				1				1
				1				1

* 이 표는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1970. 2. 28 대통령령 제4087조)의 별표중에서 발췌한 것임.

(별표 3) 국립대학교 도서관 직원 비교표

도서관별	1969년도			1970년도			증 감		
	전문직	비전문직	계	전문직	비전문직	계	전문직	비전문직	계
계	50	155	205	34	174	208	▲16	19	3
경 북 大	13	14	27	5	20	25	▲ 8	6	▲ 2
부 산 大	1	16	17	4	18	22	3	2	5
서 울 大	35	82	117	21	94	115	▲14	12	▲ 2
전 남 大	—	16	16	1	18	19	1	2	3
전 북 大	1	16	17	2	15	17	1	▲ 1	—
충 남 大	—	11	11	1	9	10	1	▲ 2	▲ 1

* 이 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집계한 통계와 「1970년도 현재 각 국립대학교현황」을 참고로 하였음.